

16

177

인원 자료실		
WS	A4	4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창립6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과 전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22-16 진일빌딩 2층
 전화 02) 521-5364 팩스 02) 584-7701

값 1,000원

일시 : 1993. 12. 11(토) 오후 2:00
 장소 : 정립호관 대강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차례

주제발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	7
인명진 (행정쇄신위원회 사회복지부문 지도위원)	

발제

1) 장애인의 사회 참여 방안	25
권도용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2) 장애인의 취업 기회 확대 방안	35
박석돈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3) 장애인의 교육 기회 확대 방안	45
윤점룡 (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4)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	51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과 전망

사회·조창영 (변호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주제발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안

인명진 (행정쇄신위원회 사회복지부문 지도위원)

발제

1) 장애인의 사회참여방안

권도용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2)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방안

박석돈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3)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방안

윤점룡 (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4) 올바른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책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제도에 개선방안에 관한 초안이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었고, 지난 10월 행정쇄신위원회가 이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와 함께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고용, 교육, 제도개선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복지를 구축하는 토대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이번 심포지움은 2천년대를 향한 장애인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주 제발표●

장애인복지제도 개선방안

인명진 (행정쇄신위원회 사회복지부문 지도위원)

障碍人 福祉制度 改善方案

〈概 要〉

○ 우리나라가 장애인 문제를 복지차원에서 인식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년 안팎으로, 그 계기는 1981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1988년의 제8회 서울장애인 올림픽대회를 들 수 있음.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고, 그동안 시설수용 보호위주의 복지사업을 재활사업으로 전환하는 한편, 1989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넓어짐.

그러나 오랜 동안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장애발생율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음.

○ 장애인에 관련된 현안 문제를 도출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등과 협의하여 본 개선안을 마련하였음.

I. 改善方案

1. 障礙人的 社會參與 支援

1) 장애발생의 예방 및 의료보장

□ 現況 및 問題點

- 오늘날 세계 각국의 장애인 수는 고도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종 재해와 환경오염 등으로 날로 증가하고 있음.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 내용	개선 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모자보건대책의 강화 ○ 산업안전 및 교통안전 대책 강화			전부처 전부처
○ 장애인의 범주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정의) 및 동법시행령 제2조(기준)	○ 곱추, 난쟁이,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 내부장애등 확대	'94상반기	보건사회부
○ "재활의학과"설치근거 마련	○ 의료법 제3조의3 의료과목에 "재활의학과" 삽입 ※ 종합병원 300병상 이상	'94상반기	"
○ 보건소에 재활의료기능 보장	○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재활요원 배치	'93~'97 (5년)	내무부
○ 보험급여범위 및 급여기간 확대 - 의료보험법 제29조 및 제30조	○ 재활의료비를 급여범위에 포함 ○ 급여기간 - 180 → 365일	'94년이후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2) 복지시설의 확충

□ 現況 및 問題點

- 전국에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 151개소와 이용시설 48개소가 있으며, '93.6월말 현재 입소희망자의 31.8%에 해당하는 13,564명이 이들 시설에서 재활상담·치료·요양 등을 받고 있음.
- 추정장애인 95만6천명중 4.5%인 4만3천4백명이 시설이용 및 입소를 희망하고 있고, 장애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수는 부족한 상태이며 시설에 지원되는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의 지원수준이 미흡함.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 내용	개선 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복지시설 신·증설 - 장애인복지법 제37조	○ 요양시설 등:50개소 ○ 재활의료센터등:10개소 ○ 이용시설 등: 9개소 ※ 국고, 지방 각각 50%부담	'94~'97 (5년) " "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								
★ 시설서비스의 질개선 ※ 국·공립시설 대비: 67.3%수준	○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97.12까지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	'94~'97	"								
	<table border="1"> <tr> <td>'94</td> <td>'95</td> <td>'96</td> <td>'97</td> </tr> <tr> <td>78.5</td> <td>79.5</td> <td>89.6</td> <td>100</td> </tr> </table>	'94	'95	'96	'97	78.5	79.5	89.6	100		
'94	'95	'96	'97								
78.5	79.5	89.6	100								
	※ 재원조달 서울(국고·지방비 각 50%) 지방(국고 80%, 지방비 20%)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장애유료복지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장애인복지법 제38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 시설의 이전 및 용지 확보	○ 시설설치 근거 마련 - 동법 제38조(시설설치) - 학교의 유휴시설 활용 ※ 개발제한구역 허용 대체 방안	'94상반기 '94~'97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교육부

※ (★)는 대통령 공약사업임.

3) 보장구 보급과 개발

□ 現況 및 問題點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체장애인증 73.7%가 보장구를 착용하지 못하고 또한 보장구 생산업체가 영세하며 투자를 기피함.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보장구 생산업체 육성 - 장애인복지법 제24조	○ 우량생산업체·수출업체 - 용자알선(재특) - 사업소득세 감면 - 보장구 부품수입등 면세 - 보장구 개발 및 제조기술자 양성 근거 “법규”마련	'94~'97 '94상반기	보건사회부 재무부 보건사회부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보장구 교부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 보장구지급 확대 (3,000명→4,000명)	'93~'97	보건사회부 시·도
○ 보장구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및 전문지 발간	○ 장애인법 제23조(보장구교부)에 지원·권장 근거 마련	'94상반기	보건사회부
○ 재활공학사업 육성 - 가칭 “재활공학연구소”설치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 마련	'95상반기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총무처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특정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동법에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삽입	"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진흥법 제14조 (과학기술진흥기금)	○ 기술개발촉진법 제18조의 제1항 각호 기관으로 지정토록 명시	"	"

※ (★)는 대통령 공약사업임.

4) 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의 경감

□ 現況 및 問題點

- 생계보조수당 지급대상기준 및 지급액의 비현실성
- 지원이 생활보호 또는 의료부조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고등학생이 제외된 교육비 지원, 통일호 이하의 철도요금 할인, 시내전화에 한정된 전화요금의 할인 등 전반적으로 지원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 내용	개선 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생활보호 선정기준의 완화 - 생활보호법 제5조	○ 일반인보다 높게 책정	'95 시행	보건사회부
★ 취업에 제약이 되는 법령 개선 ※ 38개 제약 법령중 32개 법령 개정 완료	○ 위생사등에 관한 법률 (보사부) ○ 수의사법(농수산부) ○ 건설기계관리법(건설부) ○ 선원법(교통부) ○ 도로교통법(내무부) ○ 영사기사면허령(문체부)	'95 까지 " " " "	보건사회부
★ 교육비지원 확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	○ 실업계 고등학교 - 군·시·대도시로 점진적 확대 ※ 육성회비 교육부 지원	'94~'97	보건사회부 교육부
★ 자립자금 용자대상 확대 (재특:'93, '94 각 20억) ※ 280개 시·군(구)	○ 용자대상 '93/400명~'97/1,500명 ○ 용자한도 '93/500만원~'95/600만원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대	'93~'97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 장애인 복지수당제도 신설 - 장애인 복지법 제34조	○ 지급규정 마련 ※ 지급대상 : 1~3급 연차지급	'97년까지	보건사회부

※ (★)표는 대통령 공약사업임.

5) 생활환경 개선 및 국민이해증진

□ 現況 및 問題點

-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되어 있음.
- 기존 건축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확대 곤란
-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낮은 것도 현실임.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 내용	개선 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 가칭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	'94중	보건사회부 교통부 건설부등
○ 운전면허취득차별 철폐 - 도로교통법 제70조 및 동시행령 45조	○ 1종면허 허용과 청력 기준완화	"	내무부
○ 주택구입 지원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	○ 가산점 확대 (현행 5점→10점)	"	건설부
○ 특소세(자동차세 포함) 면제범위 확대 - 특소세법 제18조 - 자치단체조례	○ 중증장애인(1~3급)대 리운전차량까지 확대	'94~'95	재무부
○ 문화생활을 위한 지원 - 정보통신 연구·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 장애인 보호등 문구 삽입 ○ 정보통신기금 현대화 사업에 포함	'97년까지	체신부

주요 내용	개선 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학교 및 연수과정에 의한 교육	○ 국정교과서에 '장애인 복지' 단원 설정 ○ 학교, 각급 연수과정에 장애인복지 교양과목 개설	'94중	교육부 총무처
○ 장애인을 위한 방송	○ 공보처에서 적극 권장	'94중	공보처 문화체육부
★ 수화 및 자막방송 - 방송법 제4조(방송의 공적책임) - 장애인복지법 제34조(수화 및 자막)	○ 방송에 수화 또는 폐쇄회로를 이용한 문자방송 권장	"	공보처
○ 장애인단체 지원 육성 - 장애인복지법 제45조(장애인단체 지원육성)	○ 실효성있는 육성방안 마련 (임의단체 제외)	"	보건사회부

※ (★)표는 대통령 공약사업임.

6) 장애복지비 증액 및 재원확보 방안

□ 現況 및 問題點

- '93 정부예산중 사회보장부문 예산은 7.5%이고, 여기서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4.4%(1조4천억)임.
 - 이는 세분하면 의료보호보험에 69.3%(9,700억) 사회복지에 30.7%(4,300억) 사용되고 있음.
 - 이중에서 장애인 복지에 사용하는 예산은 380억 정도로 극히 적은 액수이며, 이것도 법인시설 운영비등에 80%를 사용
- 각종 기금에서 장애인복지에는 기금이 배정되지 않고 있음.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 내용	개선 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사회보장 부문 예산증액	○ 현재 7.5%→10%까지 년차적으로 확대	'97년까지	보건사회부 경제기획원
○ 사회복지예산 확보	○ 새로운 재원확보 및 민간인 자본을 유인하 는 방안	"	보건사회부 재무부 경제기획원
○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 국민체육진흥기금, 문 화예술진흥기금에서 장애인복지에 단계적 으로 확대 배정	"	보건사회부 문화체육부

2. 就業機會의 擴大

□ 現況 및 問題點

-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였고,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음.
현재 장애인 근로자는 9,099명으로 결국 부담금을 내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사업주의 부정적인 시각이 이 법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임.
- 고용촉진법은 사실상 기업에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비용 보전제도가 극히 미비

- 경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중증장애인의 취업기회가 사실상 제한됨.
-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목표액 보다 2배가 넘는 기금이 조성되었는데도 취업알선조직의 확충, 전문직업훈련원의 신설, 사업주에 대한 지원등에 투자되지 않고 있음.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고용분위기 조성 - 고용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 정부의 모범적 역할 - 장애인 공무원 채용 현황을 년1회 국무회의에 정기보고 -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삽입 - 장애인고용촉진주간 근거 마련 (고용촉진법 제6조)	'94	노동부 총무처 노동부 경제기획원 노동부
○ 중증장애인등의 고용 기회 확대 - 중증장애인고용에 관한 규정 미비	○ 고용촉진법 제35조·제37조, 시행령 별표 “2”를 개정보완 - 중증장애인 『2배수 고용제』 『보조금고용제』 신설 -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확대	'94~'97	노동부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장애인 소규모직업훈련원 신설 ※ 현재 3개훈련원 : 훈련정원 370명 ○ 취업알선 체제 구축 ※ 노동지방관서 : 45개소 공단 : 4개소	○ 주요지역에 5개소 신설 - 기존 민간훈련기관에 시설·장비 및 훈련 비용 지원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 설치 확대 ※ 97년까지 15개소 설치 - 주요지방노동관서 20개소에 전문직원 2명 배치	'94~'97 '97년까지	노동부 노동부 경제기획원

※ (★)표는 대통령공약사업임

3. 教育機會의 擴大

□ 現 況

- 우리나라의 특수학교는 '93년 6월 현재 106개교임. 그 중에서도 72개교가 사립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 일반학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93년 6월 현재 3,321개 학급으로서 국민학교 2,662개, 중학교 668개, 고등학교 3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음.
- 우리나라 장애아동 중에서 자기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은 48,919명으로서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교육현장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장애가 심하여 특수

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정이나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는 형편임.

□ 問題點

- 취학 및 조기교육 기회의 부족
 - 학령기 장애유아의 부모 대부분이 특수학교에 조기 입학시켜 장애인이라는 낙인이 찍히기 싫어 입학 기피
 - 장애유아 교육시설 및 기관의 수가 절대 부족함
- 부적절한 진단·평가체계
 -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판별위원회의 운영이 일선 학교에 위임되어 진단·평가 기능을 다하지 못함.
- 직업교육의 미흡
 - 현대 산업사회에 맞는 기초 직업교육 미흡
 - 고교 졸업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준비 부족
 - 특수교육교사 양성체제의 불균형
- 통합교육 여건의 미비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들에게 적합한 편의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장애영역 및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개인차를 전제한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특수교육 담당조직의 취약

□ 改善되어야 할 事項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장애아동 교육기회 점진적 확대	○ 도심지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교(분교)병설(10교)모형 개발 ○ 소규모학교 통폐합 시설을 활용한 특수학교 신설(9교) ○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한 시도에 특수학교 신설(14교) ○ 장애인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활용을 통한 분교 확대설치(113개소) ○ 특수학급 증설	'93-2001	교육부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 직업교육 충실을 위한 특수교육 연한 연장(1~2년)	○ 고등부 졸업후의 직업교육심화과정 마련 및 설치운영(1~2년) - 지역별, 장애별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	'94~'97	교육부
★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 ※ 장애유아대상 미등록 강습소 전국 84개소	○ 특수 유치원 설치 확대 ○ 일정요건을 갖춘 사설 유치원 인가 및 교습소 등록	'94~'97	"

주요내용	개선내용	추진시기	관련부처
○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 특수교사 양성 표준모 형 개발	'94~'97	교육부
○ 통합교육여건의 완비 - 유치원, 중등학교 교사 양성 대학	○ 특수교육학 또는 특수 아 지도과목 개설 등	"	"
	○ 편의시설 확충		
	○ 장애영역 및 특성에 적합 한 교육과정 개발 편성		
	○ 개인차에 따른 개별화 교육 실시		
○ 특수학교 특수시설 설비 확충 지원	○ 특수교육 자문교사 배치	'94~'97	교육부
	○ 직업보도실 및 요육실 설치 기준대로 확보토 록 지원		
	○ 기숙사 증축 및 통학 버스 지원		
○ 특수교육 담당조직 보강	○ 교육부:과단위 조직 설치	'94~'97	교육부 경제기획원 총무처
	○ 시·도교육청: 특수교 육담당장학관 배치		
○ 특수교육담당교원의 근무유인책 강화	○ 특수교육수당 인상 (3만원→5만원)	'94~'97	"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간의 호봉격차 해소		
○ 국립특수교육원 설립	○ 설립·운영근거 마련 (직제, 예산확보)	'93	"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추진('77.12제정)	○ 특수교육여건등의 변화 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정	'94	"

※ (★)표는 대통령 공약사업임.

II. 推進計劃

□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안)은 법령·제도개선, 행정지도 등 42
종 사업으로 예산사업이 18종, 비예산사업이 24종임.

○ 예산사업은 소요예산의 증액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령·제도 개선, 행정지도로 개선이 가능한 비
예산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예산사업은 단계별 계획을 세
워 추진

○ 일반예산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존의 목적세
중 일부를 할애하거나 새로운 재원확보 및 민간인 자금을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

□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년 2회), 실행촉구

•발제 1>•

장애인의 사회참여방안

권도용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장애인의 사회참여방안

권도용

(한신대 재활학과 교수)

I. 서론

1970년대에 유엔총회가 채택한 '장애인 인권선언'이나 '장애인 10년 행동선언' 등이 공통적으로 함의하고 있는 선언내용이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 정착되고 있다. 즉 유엔총회가 채택한 권리선언 등에 함의되어 있는 이념인 ①인권존중 ②인간적 존엄성 존중 ③생명존중 ④생존권 존중 등은 장애인 개인의 인간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 이념 내용이며 ⑤Normalization ⑥사회접근권 보장 ⑦기회균등권 보장 등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사회를 추구하는 집합주의적 이념(集合主義的 理念) 내용이다. 그리고 이상의 두 이념 내용이 통합된 통합주의적 이념(개인적 이념·집합적 이념)을 성취하려고 하는 선진국들의 노력이 1970년대 이후의 현대 장애인복지의 패턴을 이루고 있다.

이상의 현대 장애인복지의 통합주의적 이념을 가시적 현실 가치로 전환한 것이 '사회참여'이며, 이것은 현대 장애인재활복지가 달성해야 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현대 장애인재활복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의 총체로 정립되어야 한다.

즉 현대 장애인재활복지는 첫째, 탈시설주의적 복지형태로 정립되고 있다. 과거의 시설수용 중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수용함으로써 소외와 부적응 현상을 가져오는 차별정책이며, 시설병에 따른 인간적 존엄성이나 생존권 존중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에 따라 탈시설주의적 장애인재활복지는 수용시설을 극소화시킴으로써 장애인의 재활복지의 기점을 가정에 두는 복지형태로 정착되고 있다.

둘째, 현대 장애인재활복지는 통합주의적 형태로 정립되고 있다. 장애인재활 욕구가 총체적으로 달성된 상태가 '완전사회참여'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참여는 '사회통합'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이 실현되는 수준이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전면의 완전참여를 의미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회에의 완전참여는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장애(신체장애·의식장애=능력장애)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장애(물리적 환경장애·문화적 환경장애·사회심리적 환경장애)가 동시에 해결된 결과로서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회복'과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환경 개선'이 통합된 형태의 복지수준이다. 따라서 '사회참여'는 부분개념이 아니라 장애인재활복지가 달성해야 하는 궁극적 목적이고 총체적 개념이며 이것은 모든 영역들의 통합형태로서 장애인재활복지에 의해 달성되어야

한다.

본 발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복지정책을 '개인적 장애제거 부문'과 '사회적 장애제거 부문'으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다.

II. 장애인의 '사회참여' 방안

장애인의 사회참여 방안은 사회구성주체로서 시민적 사회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 재활복지형태에 대한 체계화 방안이다. 즉 장애인의 사회통합(총체적인 사회생활의 복지수준)을 방해하는 장애요인(개인적 장애요인과 사회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총체적 재활복지형태에 대한 체계화 방안이다.

1. 개별지원 부문(개인적 장애 제거 부문)

개인적 장애제거 부문은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장애구성요인 중에 장애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장애'에 대응해서 이를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전인적 능력회복(개발)'을 달성하는 복지부문이다.

개인적 장애는 '신체장애'(Impairment)와 '의식장애'(Despair)로 구성되기 때문에 '개인적 장애제거 부문'은 '신체적 장애제거 복지부문'과 '의식장애제거 복지부문'을 말한다.

(1) 의료보장

1) 의료보장의 범위

(a) 장애예방 및 조기 발견

임산부 관리 및 정기검진

유아 정기검진(만 1세 검진, 만 1세 6 검진, 만 3세 검진)

(b) 조기치료

㉠ 출현율

• 장애원인을 가진 분만아동 : 12~13%

• 장애원인을 가진 아동 중 장애아 확정율 : 3~4%

㉡ 조기치료

• 장애원인을 가진 분만아동에 대한 조기치료로 장애아 확정율을 감소시킨다.

(c) 발달장애치료

아동기 장애(발달장애)는 수술 및 물리치료에 의해 부분적 장애제거는 물론 완전치료율이 높다.

(d) 고정장애치료

불가역적장애(不可逆的障碍)로 고정된 신체장애에 대한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해 한정적 치료와 악화를 방지한다.

2) 의료보장제도 확대

(a) 재활의료기관 확대

㉠ 종합재활병원설치(각도 1개)

㉡ 종합병원 내 재활의학과 설치 의무화

㉢ 보건소 재활의료 기능강화(임산부 검진, 유아검진기능)

(b) 의료급부 확대

㉠ 자산조사(means test)제도 도입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를 명확히 한다.

㉡ 의료보호대상자의 조기치료, 발달장애 치료, 고정장애치료를 위한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의 전액을 지원한다.

(2) 심리·사회적응 지원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는 개인적 장애는 '신체장애'보다 주체적 의지의 부족이다. 중증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이상으로 훌륭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으며 반면에 경증 신체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사회참여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런 현상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신체장애보다는 심리적 문제나 사회부적응문제로 구성된 '의식장애'(Despair)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현상이다. 따라서 각종 장애인재활복지 기관(의료, 교육, 직업, 등의 재활기관)에는 심리적 문제와 사회부적응 문제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기구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1) 의료재활기관

(a) 의료상담과

(b) 의료재활사회사업과(MRSW)

2) 교육재활기관

(a) 교육상담과

3) 직업재활기관

(a) 직업상담과

(b) 직업재활사회사업과(VRSW)

(3) 재활복지시설 확대 및 정비

1) 수용시설의 최소화

탈시설주의적 재활복지형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용시설을 최소화해야 한다(즉 가정을 기점으로 하는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재활복지형태 정착).

2) 이용시설의 최대화

통합주의적 재활복지를 발전,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인의 전인적 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이용시설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야 한다(의료재활시설, 교육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종합복지시설, 장애별 단종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4) 재활복지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재활복지는 특정 전문영역이 아니라 모든 전문영역이 통합된 총체이다(모든 전문영역의 Team Work으로 이루어진 기능적 총체이다). 따라서 전문영역을 구성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배치, 처우 등이 제도적으로 관리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 1) 의료재활 전문인력 팀-의사, 간호사, PT, OT, 의료사회사업가
- 2) 교육전문인력 팀-특수교사, 교육상담원
- 3) 직업재활 전문인력 팀-직업교사, 직업평가사, 직업상담원, 재활사회사업가

2. 사회환경 개선부문(사회적장애 제거부문)

사회적 장애제거 부문은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하는 장애요인 중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장애'에 대응해서 이를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이 공존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복지부문'이다.

사회적 장애는 '물리적 환경장애', '문화적 환경장애' 및 '사회심리적 환경장애(편견)'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들 환경적 장애요인을 개선하는 부문을 말한다.

(1) 소득보장

- 1) 장애인복지 연금제도 도입
연차계획수립에 따른 무각출 복지연금제도 도입으로 소득보장체계의 기본틀을 마련해야 한다.
- 2) 제 수당제도 도입
(a) 장애수당 (b) 부양수당 (c) 직업훈련수당 (d) 취업조정 수당
(e) 케어수당 (f)이동수당 등
- 3) 근로소득과 소득보장제도와의 통합
취업가능자, 취업불가능자, 취업불원자를 구분해서 보족적 소득보장제도와 일률적 소득보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소득과 소득보장제도와의 통합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 생활환경개선

- 1) 공공건물 기준화
(a) 관공청 건축물을 장애인 이용가능한 구조로 기준화
(b) 학교, 문화시설을 장애인 이용가능한 구조로 기준화
(c) 대중이용시설(점포, 백화점, 슈퍼마켓, 식당, 호텔 공중변소 등)을 장애인 이용가능한 구조로 기준화
(d) 이동시설(기차, 전차, 버스, 택시, 비행기, 선박 등의 역과 정류소, 공항 및 선착장 등) 및 도로를 장애인 이용가능한 구조로 기준화
- 2) 주택 기준화
(a) 주택배정의 기준화 공영주택 및 일반주택 단지의 장애인 전용주택 배정과 편의시설을 기준화해야 한다.
(b) 주택기금 조성 장애인 주택분양, 주택중·개축 및 보수자금의 보조 및

용자기금조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c) 장애인용 주택설계의 개별화 기준 장애종류, 정도, 특징에 따른 본인의 요구대로 주택설계를 개별화해야 한다.

〈표 1〉 근로소득과 소득보장제도의 통합(가설)

고용형태 (대상) 소득보장정책	일반고용 (대상자)	통합·혼합고용 (대상자)	보호고용 (대상자)	고용불가능한 자 또는 고용불원자
〈취업 전〉 1. 복지연금정책 2. 각종수당정책	1. 복지연금비 적용 2. 한정적 실업수당 (직업재활신청 후 지급기간설정) 3. 한정적 직업훈련 수당(훈련기간에 한정)	1. 복지연금(장애에 따라 차등 실시) 2. 한정적 실업수당(직업재활 신청 후 지급기간 설정) 3. 한정적 직업훈련 수당(훈련기간에 한정)	1. 복지연금(장애에 따라 차등 실시) 2. 한정적 실업수당(직업재활신청 후 지급기간설정) 3. 한정적 직업훈련 수당(훈련기간에 한정)	1. 복지연금(장애에 따라 차등 실시) 2. 공적부조(생활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 3. care 수당(care 종류에 따라 차등 실시) 4. 장애수당(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 5. 기타수당(개인 차에 따라 조정)
〈취업 후〉 1. 복지연금정책 2. 각종수당정책	1. 복지연금비 적용 2. 임금보장(비장애인 과 무차별 보장)	1. 복지연금비 적용 2. 임금보장(비장애인 과 무차별 보장)	1. 복지연금(보족적 연금) 2. 임금보장(국가 지원금 포함 최저 임금 보장)	
소득보장	비장애인 과 무차별 보장	비장애인 과 무차별 보장	최저임금보장	최저생계보장

〈표 2〉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이용기준화에 대한 법률 내용

법 조 항	규 정 내 용
건축법 시행령 제35조	공공건물 및 시설의 장애인용 설비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통로 및 대변기 10이상의 경우 1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	500석 이상의 관람장, 공연장의 장애인용 설비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대변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500석 이상의 관람장, 공연장의 장애인용 설비 설치 (장애인 관람공간의 유도 표시판)
장애인 복지법 제33조	도로, 공원, 공공건물, 공동주택 등의 편의시설 설치 (공중전화 등 편의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에 대한 설비의 크기 및 세부 설계지침 (장애인용 승강기, 화장실의 크기 및 부속시설물에 대한 세부지침)

〈표 3〉 장애인 주택기준화에 대한 법률 내용

법 조 항	규 정 내 용
주택건축촉진법 제22조	주택단지 내의 복지시설 기준 (경사로, 출입구, 화장실 등의 세부설계 규정)
주택건축촉진법 제23조	장애인 전용주택 설계 기준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복도, 욕실, 화장실의 세부설계 규정)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침 제7조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 가산점 (장애인 가산점 5점)

3) 이동시스템 기준화

가. 이동시스템 기준화의 기본원칙

- (a) 버스, 택시, 전철, 기차, 비행기 등 총체적 이동시스템에 대한 기준화
- (b) 지체, 시각, 청각 등 전 장애인의 이용가능수준으로 기준화
- (c) 전국 통일적인 기준화
- (d) 물리적 부분, 제도적 부분, 운영부분, 기술부분, 전문서비스, 제반표시 등 Hard부분과 Soft부분을 포함한 총체적 부분의 기준화

〈표 4〉 장애인 이동시스템 기준화에 대한 법률 내용

법 조 항	규 정 내 용
건축법 시행령 제52조	승강기, 통로설정 (4대이상의 승강기 설치 건축물에 1대 이상의 장애인용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주차장 설치 (주차장 총수의 1%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음향신호기, 장애인 승차대, 저상매표소, 시각장애인유도도로 안내표시등 설치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14조	철도 및 지하철 요금 할인
지방자치단체조례 (세제 22670-10499)	자동차세 면세 (지체부자유자 1~3급)

나.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 (a) 대중교통
 - 전 대중교통의 장애인 이용가능 수준으로 기준화
- (b) 장애인 특수교통제 도입
 - 복지택시제, Demand Bus제, Dial a Ride(호출택시)제 등 도입

4) 건축물 기준에 관한 통합법 제정

현행 건축물 기준법, 주택건설 촉진법, 도로교통법, 도시계획법, 주차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 건축물 기준 조항을 재조정, 통합해서 '건축물 복지기준법'을 제정

(3) 장애인 복지비 증액

총체적 개념으로서의 복지비 책정기준 설정

- 1) 시민(장애인)의 총체적 사회생활의 복지수준 달성을 위한 복지비 구성
- 2)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회환경개선비용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수준향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복지비용 산출 방식

〈표 5〉 발전적인 국가의 복지비 비교 책정

	스웨덴	독일	미국	일본
GNP 복지비	19.5%	15.7%	18%	11%
총예산대 복지비	25.5%	18.3%	27.6%	19.5%

III. 결론(과제)

1. 법제도쇄신위원회 설치의 필요성

복지의 질적 향상은 법제도의 질적 향상에 의존되기 때문에 법제도의 쇄신이 없는 행정쇄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법제도의 수준 → 정책수준 → 행정수준 → 프로그램수준).

따라서 「행정쇄신위원회」의 해체와 동시에 대통령 직속(또는 국회내)으로 '법제도쇄신위원회'를 상설하고 국민적 의사수렴에 따른 지속적인 개선으로 규범문화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2. 전달체계

(1) 통합정책기구 설치의 필요성

복지정책은 어떤 부분에 한정된 체계일 수 없다. 각 부처 정책을 통합한 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통합정책수립기구'가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로 필요하다.

(2) 하부전달체계

통합복지정책시행 부처로 사회복지부(사회복지청) 신설과 그 체계수립이 요청되며, 특히 최말단 행정기구(읍·면)는 대민복지행정기구로서 전문화시켜서 총체적 국민생활의 복지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편성이 요청된다(민원행정은 전산화에 의한 간소화로 시·군·구 단위에서 해결 가능).

3. 복지비 상향조정

총체적 복지수준 향상을 비용으로 책정

- (1) GNP의 6%이상(1960년대의 OECD국가들의 GNP대 복지비 : 평균6%수준)
- (2) 총예산의 15%이상

•발제 2>•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방안

박석돈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장애인의 취업기회 확대방안

박석돈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

1.

오랫동안 경제사회활동에 대한 참가의 기회가 배제되어온 장애인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일반인과 동등한 고용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 3년째를 맞았다.

이 법률의 제정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고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까지 인식하게 한 획기적인 조치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은 할당고용제에 의한 일반고용의 형태로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주의 부정적인 인식이 최근들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선진국의 장애인고용환경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규정이나 기업에서의 실제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의 해당기업체를 3백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제한하여 대다수의 중소기업을 해당기업에서 제외시켰고, 부담금도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낮아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강력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할당고용율도 현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최고 20%까지로 제한되어 있어서 선진국보다 낮게 규정되어 있다.

'1992년 장애인취업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의 취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고용의무 비적용업체에서는 기업인의 인식과 수용태세가 3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국가의 합리적 정책(29.8%), 장애인 본인의 노력(2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고용의무 적용업체와 비교해보면 적용업체는 장애인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반면 비적용업체는 기업인의 인식과 수용태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적용업체는 의무고용 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적응력이 강한 근로자를 요구하는 반면 비적용업체는 의무고용대상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업인 자신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자성적인 반응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에서 장애인 고용시 사업체에서 필요한 사항을 제시한 것을 보면, 편의시설(34.3%) 위험부담 해소책(33.5%)에 대한 응답률이 높는데 이러한 점은 사업체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무고용에 다른 규제보다는 사업체에 국가가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어야 하겠다는 사실을 지적해준다.

이와같은 사실과 '1993년 장애인고용 특별비용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의 인식전환과 수용태도, 국가의 사업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에 있어서는 정부의 개입을 비형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아도 무방하게 되어 있다.

사업체나 장애인의 불이익 조건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엄격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일반고용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형태를 갖추어 제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고용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정책과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이 법의 집행과 실제결과에 따라서 장애인고용환경을 점차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장애인고용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남은 과제로서 법제정의 근본취지를 바르게 살리고 이 제도를 보다 완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장애인 취업기회의 확대방안'에 관한 발표자의 주제발표는 현 한국실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과제를 안고 있는 장애인고용분야에 대해 시사하는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발표의 내용이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제도 및 실태분석에 토대하여 향후의 장애인 취업기회의 확대방안에 관해 폭넓게 이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주제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따라서 특별히 토론의 대상이 될 만한 점보다는 조금 덧붙이거나 강조하고 싶은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

'1992년 장애인취업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고용의무 비적용사업체는 의무고용대상업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적용사업체보다 장애인고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의무 비적용사업체는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30세 미만의 젊은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고 장애인 유형도 언어, 정신지체, 기타(중복장애) 장애인들을 적용사업체에 비해 많이 고용하고 있었다.

또 중중에 속하는 1, 2, 3급의 장애인을 적용사업체에 비해 많이 고용하고 있어 향후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대책으로서 비적용사업체의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도 적용사업체가 자신의 사업체에서 사고를 당한 산업재해, 국가유공자들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반면 비적용사업체는 선천성 장애인, 기타 질병에 의한 중도장애인들을 적용사업체에 비해 많이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취업을 의뢰하는 장애인들을 비적용사업체와 많이 연결시켜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와 교통문제 해결 등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고용때문에 사업체가 불이익을 가져오거나 사업체의 불이익 때문에 장애인의 고용이 거부당해서는 성공할 수 없으므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체의 불이익 조건이나 장애인의 고용이 거부당할 수 있는 불이익 조건을 제거시키기 위한 정부차원의 배려가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기업과의 제휴프로젝트(PWI)나 긍정적인 행동계획 등은 정부의 개입을 형태화시켜서 법제화한 것이다. 스웨덴은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손비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고용(subsidied employment)제도를 사용해서 정부의 개입을 구체적으로 형태화하고 있다.

독일(서독)에서는 고용을 미달성 사업주는 민간이나 관공서와 관계없이 미달성 1명당 월 150마르크의 부담금(대상금)을 '대상금기금'에 납입한다. 이 기금은 연방노동사회 장관이 관리하고,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촉진 및 직장생활이나 직업생활에 있어서의 원조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하고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해서는 기술적 원조를 위한 급부, 취직원조를 위한 급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급부, 주택확보를 위한 급부, 직업훈련을 위한 급부 등이 있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에 적합한 설비개선을 위한 급부, 작업보조자를 위한 급부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각종 조성금 제도와 유사한 것들이 있다.

이와같이 선진국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노동능력이나 일상생활 유지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한해서 국가는 임금, 편의시설, 작업설비개선, 설치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의 고용은 국가 책임주의적 정부개입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다.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의 성공적인 달성은 사업체의 욕구와 장애인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직업교육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가적, 범사회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서독, 일본, 미국에서는 고도로 발달한 현대화된 시설·설비를 학생들이 가능한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업내 직업교육'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이 자기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교육을 받고 관련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에서는 직업교육의 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의 폭을 무조건 확대할 수 없지만 확대하더라도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특수학교에 있어서 직업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직업훈련소 또는 산업체와의 유기적인 관계형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지역사회에 통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재활의 목표인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문제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CBR)에 의해 확대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인해 장애인 복지사업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개하여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격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CBR의 고유모델을 개발, 보급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장애인과 지역사회, 기업이 적극 참여하여 이루어내는 직업재활이 지역사회 중심 재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기업종사를 목표로 하는 장애인의 훈련에 있어서는 받아들이는 업계의 기술수준과 인재에의 기대수준이 직접 반영된 현실적 훈련이 인재양성을 위해

훈련된 지도자와 환경 속에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을 실현한 것이 미국 재활법에 기초한 직업재활 전문행정과 사업소가 파트너가 되어 성립한 PWI(Projects With Industry)제도이다.

전에는 주정부 재활국이 직업적 신분의 향상을 원하는 장애인의 스폰서로 되면 그 훈련을 직업재활센터나 보호공장 훈련부문에 위탁해 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사업주나 그 연합조직이 기업의 수준이나 기대에 근거하여 행하는 인재교육훈련의 기술과 활기에는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사업소 기능의 일부에 주의 전문성을 주입하여 직업재활기관화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면 IBM회사의 PWI는 '산업행동'(action by industry)이라고 불리며 미국 전국 약 60프로젝트 중의 하나인데 이 계획의 산하에 많은 지방 IBM이 참가하고 있다. 각 프로젝트(각 사업소 연합에 의한 계획)는 그 본부소재지의 주정부의 재활국과의 파트너십을 갖고, 그 계획에는 ①현재훈련 ②고용준비성을 높이는 훈련 ③지도자, 직장들에 의한 고용단속지도 ④직업 기초지식의 교육 ⑤시험고용 등의 실시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 훈련을 전 과정에 걸쳐 지도조정하기 위해 특별지도자를 고용선임하는 것이 각 계획에 의무화되어 있다.

각 계획은 또 지역조직화의 리더, 사업소, 교육자, 민간단체 및 학식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갖고 그것은 나아가 ①훈련 ②취업 ③운영의 각소위원회로 나뉘어져 기능하고 있다.

발전과정에서 각 계획에는 특성이 형성되어 세계의 PWI 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즉 첫째의 '고용촉진형'은 동계열의 사업소에의 취업을 강조하며, 둘째의 '노동적응형'은 일정기간 내의 취로체험에 의해 노동습관이나 태도의 성의를 기대한다. 셋째의 '기능훈련형'은 엄격한 훈련과정에서 탈락도 각오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대체로 고임금이 약속되는 기술을 몸에 익힌다.

예를들면 IBM의 PWI는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양성으로 60%의 훈련생밖에 이수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확실한 전문직종자로서 전 미국 90개의 IBM 사업소에 채용하고 있는데 전술한 유형 중 제3의 '기능훈련형'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PWI는 신뢰성 있는 기업의 기술수준과 인재양성훈련의 경험에다 정부의 직업재활과학의 지도성이 일체화하여 태어난 것으로 정상화(normalization)를 심은 직업훈련의 미국적 독창성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PWI 실천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의 지역사회 사업주들에게도 인식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모델의 일환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우리나라에서 같은 시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동부에서 노동행정의 일환으로 직업재활체계의 일관성을 조직적으로 도입하고 사업소를 리드하는 직업재활의 원리와 기술을 아는 풀타임의 전문직업카운슬러를 적어도 도단위 및 공단별로 수명씩 배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한 조직적이고 본격적인 훈련원 외 훈련의 실현은 어려울 것이다.

4.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법 시행초기에 겪게 되는 많은 난제 중 가장 큰 당면과제는 기업주의 대부분이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데서 오는 취업알선의 어려움이다.

고용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이란 의학적 기준과는 달리 작업수행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업주의 시각으로 보는 중증장애인의 개념은 작업수행능력과는 극히 무관한 외형적인 신체기준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관계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석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과 작업수행능력에 대한 편견과 불신이 주된 요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각 고용의무제의 적용대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피 현상과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와 교통문제해결 등에 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노력 그리고 기업주의 인식전환과 수용노력이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사업주가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것은 인지상정으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우선은 경증장애인과 직업능력이 우수한 장애인을 먼저 고용한 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방안으로는 정확한 직업능력 평가,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직업훈련의 실시,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종개발 등이 필요하다.

일반고용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경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제도는 현실적으로 존재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행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서독의 경우처럼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법으로 개정해서 사업체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의무주체로서 적극성과 책임성을 갖도록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서독과 일본의 경우처럼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확대를 위하여 '보조금고용제', '2배수고용제'를 실천하여 고용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예를들면 정신지체인 <청소원, 주차관리>, 시각장애인 <전화교환원, 승강기운전원>등)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

5.

고용율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험부담을 가져야 하고 취업조건을 구비하기 위해 사업체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고용율이 낮을 경우에는 위험부담이나 노력없이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편이 간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업체의 이득으로 계산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대기업일수록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고용의 법정고용율(1991년 1%, 1992년 1.6%, 1993년 2%)도 사업체가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편이 사업체의 이득을 가져올 수 있는 낮은 고용율로 분석된다.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후 고용의무 사업장의 장애인 수의 증가는 1993년 1월 현재 1천3백41명이며 의무고용 이행율은 22.4%로 전체 고용의무인원 4만5백79명에 비해 3만명이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업주는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월 13만8천원의 부담금을 납부하여 그 기금의 크기도 당초 예상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장애인 기피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93년 장애인

고용특별비용연구'에서와 같이 ①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생산성이 낮을 것이며 ②장애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노무관리상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와 그 밖에 ③심리적 부담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되도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주로 채용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정도에 대한 경, 중의 구분이나 이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등은 없는 실정이다.

'1992년 장애인 취업실태보고서'에 의하면 고용의무 적용업체일수록 비적용업체에 비해 더욱 경증장애인을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의무고용인원이 많은 대기업이 비적용업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장애인을 다수 고용할 때 생산에 있어서 손실이나 관리비용의 증가가 두드러지므로 더욱 경증을 선호하며, 특히 대기업을 선호하는 장애인의 수가 많음으로 이들에 대한 고용 적부를 선별할 수 있는 기회를 상대적으로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석된다. 의무고용제의 당초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①현재 사업주가 느끼고 있는 장애인 고용에 따르는 부담, ②향후 보다 증증화된 장애인 취업구조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인책(incentive), ③현재 취업 중인 장애인 근로자의 직장적응에 따르는 어려움, 특히 증증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지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1993년 장애인 고용특별비용 연구'의 조사결과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주들은 장애인을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고용관리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각 사업장의 업종 특성, 편의시설 부족, 고용관리의 어려움 및 비용부담 등을 내세워 고용을 기피하고자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지불하는 것 이외에 크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즉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부담정도는 반드시 비용에 대한 부담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오히려 심리적 부담이 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향후 지원 등은 사업주 의견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욕구를 함께 고려할 때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6.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환경이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이 기업체에서 잘 준수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고용은 크게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장애인 고용의 주체로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체가 의무화된 장애인고용을 얼마나 잘 실천할 것인지는 기업체의 경영이념과 기업체의 당면한 상황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기업체의 경영자들은 대체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규정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준수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체에서 장애인고용은 아직 높은 우선순위(high priority)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한 적극적 행동프로그램(affirmative action program)이 요구된다.

앞으로 장애인 취업기회의 확대방안으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주제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장애인 고용업체 지원확대, 장애인 고용분위기 조성, 장애인 직업훈련확대, 취업알선체제 구축, 증증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고용특별비용 연구를 토대로 기업의 특성과 작업환경이 충분히 고려된 장애인고용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한 기업훈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장 내외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발제 3>•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방안

윤점룡 (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교수)

장애인 교육기회의 확대방안

윤점룡

(전주우석대 특수교육과)

1. 특수교육 현황

- 우리나라 특수학교는 '93년 12월 현재 106개교임. 그 중에서도 72개교가 사립이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사립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일본의 경우는 2%만 사립), 또한 특수학교 시설의 차가 큼.
- 일반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은 '93년 12월 현재 3,321개 학급으로서 국민학교 2,662개, 중학교 656개, 고등학교 3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음.
- 우리나라 장애아동 중에서 자기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49,195명(특수학교 유치부 888명 포함)으로서 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일반 교육현장 속에 방치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애가 심하여 특수학교의 입학이 거부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가정이나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는 형편임.

2. 특수교육의 문제점

가. 특수교육 기관의 부족

장애 아동들이 교육 받을 기관이 부족하며 특수학교가 도시에 편중되어 있어서 시골 장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기회가 적음.

나. 조기교육 기회의 부족

장애유아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하다. 게다가 대부분의 조기교육원이 대도시에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강료도 비싸서 학부모의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유치부는 전국에 118학급이 있으나 일부 학부모들이 장애인이라는 낙인을 찍히기 싫어 기피하는 사례도 있음.

다.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대책 미흡

가정이나 병원, 또는 수용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증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함.

라. 부적절한 진단·평가체제

- 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 2조(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에 판별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일선 학교에 위임되어 진단·평가 후 배치하고 있어서 장애학생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음.
- 판별기준이 모호하며, 각종 판별도구의 미비.

마. 직업교육의 미흡

- 현대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기초 직업교육 미흡.
-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기술 부족과 직업생활 적응 준비기간 부족.

바. 통합교육 여건의 미비

- 일반학생과 교사들이 장애학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 부족.
- 일반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며 개별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가 빈약함.

사. 행·재정적 지원 미흡

-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조직이 약해 장학협의 행정 협조 미약.
- 특수교육에 지원되는 재원 빈약.

아.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사기 저하

자. 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 또는 사회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부족

3. 교육기회 확대의 구체안

가. 법으로 장애아동의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보장

-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 법안에 유치원 과정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의무교육 명시.
- 법안에 의무교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 교육법 98조 삭제

나. 장애인 교육센터의 설립

- 시·군(구) 교육청 내에 장애인 교육센터 설립.
 - 하는 일: 장애아동의 평가 및 판별, 교육기관 배치, 부모상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지원, 자문 및 순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개발, 진로지도, 추수지도 등.
 - 일하는 사람: 특수교육 전담 장학사, 특수교육 교사 약간명, 심리학자, 치료교육교사, 간호사, 의사(지정 병원).
- 시·도 교육청에는 관내 하부 교육청에 있는 '장애인 교육센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큰 규모의 '장애인 교육센터' 설립.

- 교육부 내에는 '특수교육과'에 '장애인 교육센터' 담당계 설치.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증원해 나가면 실현가능함.

다. 통합교육 여건 완비

-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자문교사 배치
- 장애학생을 위한 일반학교의 시설 보완.
- 일반학교 교과서에 장애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삽입.
- 사범대학이나 유아교육과에 '특수교육' 과목을 필수로 넣고 일반교사들에게 '특수교육' 연수 실시.

라. 조기교육 기관 확충

- 특수유치반 설치
 - 국민학교, 유치원, 장애인 복지관, 수용시설에 설치·운영.
- 특수유치원 설립·운영
 - 기존의 조기교육원을 인가제로 등록 운영.
 -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이 의무화되면 교사의 인건비와 유치원 운영비 정부에서 100% 지원 가능(부모의 가계부담이 줄어듦)

마. 특수학급 확충

- 학급이 줄어드는 일반학교에 특수학급 설치·운영
 - 통합교육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근거리 통학 가능.
 - 국가 재원 절약.
 - 별도의 부지에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보다 일반학교 내에 소규모 특수학교 (일종의 특수학급 형태) 설치.
- 국립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부속학교에 특수학급 의무적으로 설치.
- 중학교 특수학급 증설(현재 초등 699학급, 중등 270학급).
-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설치.

바. 특수학교 증설

- 폐교되는 학교를 특수학교로 활용.
-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부속 특수학교 설립 의무화.
- 규모가 큰 특수학교보다는 소규모 특수학교를 여러곳에 설립.

사. 시각·청각 학생을 위한 직업 전문대학 설립

- 현행 전공과는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학생을 위해 운영

아. 사립 특수학교 정리 및 재정지원

- 학교 운영이 부실한 사립학교는 공립화(사립 특수학교 평가단 일시 운영)
- 건실한 사립학교는 국고에서 재정지원을 하여 국·공립 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킴.

자. 우수한 특수교육 교사 확보

- 특수교육 수당 인상(20년 전에 받는 금액으로 현재 받고 있음)
- 특수학급 교사도 특수학교 교사와 동등한 대우
- 가산점제도 연차적으로 폐지

•발제 4>•

올바른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책

조홍식(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올바른 장애인복지제도 개선책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집결된 요구와 보사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연구과제를 토대로 하여 작성된 행정쇄신위원회(이하 행쇄위) 장애인복지정책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을 총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행쇄위의 추진계획안을 보면 제출된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기본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 취업기회 확대, 교육기회 확대 방안의 세부문으로 나누어 각각의 건의사항에 대한 ①법적 근거 및 내용 ②개선사항 ③시기 ④관련 소관부처 등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목표 및 방법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3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검토는 앞에서 세 분의 발제자가 잘 검토해 주셨기에 여기서는 총괄적인 면에서 계획된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개선책이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확실한 실천의지를 얼마나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대상, 서비스내용, 전달체계, 재원면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후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해 보고자 한다.

1. 행정쇄신위원회 장애인복지정책 내용 검토

(1) 정책대상

정책대상으로 장애인의 범주를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만 인정한 것을 곱추, 난장이, 자폐증, 신부전증 등 정서발달, 내부장애 등을 포함하여 1994년 상반기부터 확대시키고자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장애인정책은 예방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의 정기검사 및 상담, 장애인의체 발견을 위한 영·유아 부모들까지 포함한 정책대상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포괄성의 문제가 있다.

(2) 서비스 내용

행정쇄신위 정책내용의 대부분이 이에 집중되어 있다. 사회참여 지원, 취업기회 확대, 교육기회 확대 방안의 3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를 사회복지의 주요 부문체계인 소득보장, 의료보장, 고용보장, 교육보장, 주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보장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하여 추진계획에 있는 실질적인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소득보장

- 1) 95년도부터 장애인의 재산과 월 소득수준을 일반인보다 높게 책정하는 생활보호 선정기준을 완화시켜 시행하고,
- 2) 점차 실업계고등학교까지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 3) 자립자금 용자대상 및 금액을 현재 400명, 500만원에서 97년도 1,500명, 95년부터 600만원으로 확대해 나가고,
- 4) 장애인 복지수당제도 규정을 97년도까지 마련하며,
- 5) 취업에 제약이 되는 위생사용에 관한 법률, 수의사법, 도로교통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38개 제약법령 중 32개 법령을 현재 개정완료했으며, 95년도까지 나머지 법령도 개선하겠다는 추진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립자금용자와 법령개선을 제외하고는 구태의연한 선연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생활보호 선정기준이 교육비 지원 수준, 장애인 복지수당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매점 등 설치에 우선권 부여나 장애인제작품 우선 구매제도의 시행 등을 통한 구체적인 생업지원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절성(타당성)과 실천의지가 낮다고 하겠다.

(나) 의료보장

- 1) 94년 이후 재활의료비를 의료보험 급여 범위에 포함하고,
- 2) 요양급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하며,
- 3) 보장구 우량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용자알선(재특), 사업소득세 감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면세 등의 방안을 시행하며,
- 4) 94년도 상반기에 보장구 개설 및 제조기술자 양성근거가 될 법규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 5) 장애인복지법 제23조(보장구 교부)에 지원, 권장 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마련하기로 하였고,
- 6) 95년 상반기에는 가칭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근거를 장애인복지법에 마련하도록 하고, 기술개발촉진법에 재활공학연구소 설치를 삽입하고, 과학기술진흥법에 재활공학연구소도 기관으로 지정되도록 명시하고자 했으며,
- 7) 보장구 지급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는 것을 97년까지 되도록 하며,
- 8) 의료법에 재활의학과를 94년 상반기에 삽입하며,
- 9) 97년까지 보건소에 재활의료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설치 및 재활요원을 배치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의료보험 급여범위에 재활의료비를 포함시킨 것이다. 급여기간을 연중 내내 받도록 하거나, 재활공학연구소 설치, 재활의학과와 삽입 등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계획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보장구 지급의 확대나 보건소의 물리치료실 설치, 재활요원의 배치 등은 97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당장 시급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고용보장

- 1) 94년부터 장애인고용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앞장서서 장애인 공무원 채용현황을 연 1회 국무회의에 정기 보고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장애인고용 실적'을 삽입하며, '장애인고용추진주간' 근거를 고용촉진법에 마련하고,

- 2)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배수 고용제', '보조금 고용제'를 신설하고,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를 확대해 가기로 하였으며,
- 3) 현재 3개 직업 훈련원을 97년까지 주요지역에 5개소를 신설하며, 기존 민간훈련기관에 시설, 장비 및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 4) 취업알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15개소 설치하며, 주요 지방노동과서 20개소에 전문직원 2명을 배치하기로 하였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내년부터 당장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에서의 고용실적을 조사하거나 고용추진주간을 마련하였다는 계획은 민간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기회 확대방안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취업알선체제 구축이나 직업훈련원 신설 등은 양적인 시설구축과 함께 질적인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아쉬우며, 장애인고용업체 지원 확대방안이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취업기회 확대에 대한 정책실현 가능성과 정책 실천의지가 그렇게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 교육보장

- 1) 도심지 학교의 잉여교실을 활용한 특수학교 병설(10개교) 모형개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설을 활용한 특수학교(9개교) 신설, 시·도에 특수학교(14개교) 신설, 장애인복지관 수용시설의 공간활용을 통한 분교장(113개소) 설치, 특수학급 증설 등을 통한 장애아동 교육기회를 1001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 2) 고등부졸업 후의 직업교육 심화과정(1-2년) 설치운영과 지역별 장애별 시범학교 선정 및 운영을 97년까지 하며,
- 3) 조기특수교육기관의 제도화를 위하여 특수유치원을 확대하고, 전국 84개소 미등록강습소 중 일정요건을 갖춘 유치원 및 교습소를 97년까지 인가와 등록을 하게 하며,
- 4) 특수교육교사 양성대학 교육과정의 표준화 및 통합교육 여건을 완비하기 위하여 유치원, 중등학교 교사 양성대학을 97년까지 마련하며,
- 5) 97년까지 특수학교 특수시설비 확충지원 및 특수교육 담당조직의 보강으로서 교육부에 과단위 조직을 설치하고,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장학관을 배치하며,
- 6) 특수교육담당교원의 근무유인책으로서 특수교육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간의 호봉 격차를 97년까지 해소해 나가며,
- 7) 93년에 국립특수교육원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8) 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계획의 대다수를 97년까지 점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보아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실천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현재 제시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취종의 내용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마) 주택보장

장애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은 94년 중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현행 5점에서 10점으로 가산점을 확대해줄겠다는 것 뿐이며, 장애인 주택공급이나 주택개조 등에 대한 보조나 감세 및 비과세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빈약하다고 하겠다.

(바) 대인적 사회서비스 보장

- 1) 요양시설(50개소), 재활의료센터(10개소), 이용시설 등(9개소)을 97년까지 신·증설하며,
- 2) 장애유료복지시설 설치 근거를 94년 상반기에 법에 반영하고,
- 3) 시설이전 및 용지확보대책으로서 97년까지 학교의 유휴시설 활용방안을 강구하며,
- 4) 94년 중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1종 운전면허 허용과 청력기준을 완하며,
- 5) 중증장애인(1~3급) 대리운전 차량까지 특소세 면제범위를 95년까지 확대하고,
- 6) 97년까지 장애인 보호 등 문구삽입과 정보통신기금 현대화 사업에 장애인 분야도 포함하며,
- 7) 94년 중에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 단원 설정과 학교, 각급 연구과정에 장애인복지 교양과목을 개설하고, 장애인을 위한 방송과 수화 및 자막방송을 공보처에서 적극 각 방송사에 권장하며,
- 8) 장애인 단체(임의단체 제외)의 실효성 있는 육성방안을 94년 중에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 중에 장애유료복지시설 설치 근거 마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과 1종 운전면허 허용과 청력기준의 완화, 국정교과서에 '장애인복지' 단원 설정, 연구과정에 '장애인복지' 교양과목 신설, 수화 및 자막 방송의 권장 등은 장애인이 가진 대인적 사회서비스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복지시설 신·증설과 시설이전 및 용지 확보 대책, 정보통신 등 예산과 관련된 부문에 대해서는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함을 보여준다.

(3) 전달체계

장애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민간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97년까지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는 것과 유료복지시설 신설 이외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장애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보사부에 통괄적으로 정책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국'이 신설되어야 하며, 앞으로 '복지사무소'가 만들어질 때 장애인복지가 중요한 분야로 포함되어야 한다.

(4) 재원

97년까지 사회보장부문 예산을 현재의 7.5%에서 1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예산확보 방안으로 '사회복지세' 신설을 검토하며,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장애인복지에 단계적으로 확대 배정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재원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정책의 실천의지는 전반적인 경제정책과 비교할 때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점은 계획안에서 밝혔듯이 예산사업은 단계별 계획을 세워 추진하되 일반예산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복지세 신설이나 기존의 목적세를 할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정도로 그치며, 법령·제도 개선 등 비예산사업을 우선 추진하였다는 데서 엿볼 수 있다.

2. 정책안의 개선방안

(1) 장애의 예방과 조기발견, 조기치료에 대한 정책 관심제공

장애인복지정책 대상을 장애인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전국민에게까지 확대해야 하며,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시스템을 확립해가야 한다.

(2) 장애인복지서비스 최저기준 설정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서비스급부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것이 서비스 급부의 내용과 종류에 따른 표준화 작업이다. 소위 서비스 급부에서의 최저기준이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급부수준의 결정이라고 하는 작용과 함께 표준화된 서비스급부의 그 이하만은 내릴 수 없다고 하는 구성요건의 규정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

장애인복지 관계 정부부서간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한 보사부내 '장애인복지국'의 신설이 요구되며, 서비스 전달의 제일선기구로서 '사회복지사무소'의 설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다양한 장애인복지 참여주체의 의견수렴 통로로서의 위원회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계설정이 명료화되어야 한다.

(4) 장애인복지예산 증액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체예산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서비스가 공급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현 GNP 1%인 복지예산이 2%로 확대되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

(5) 장애인복지 관련법의 개선

국가의 확고한 책임이 의무조항으로서 법에 명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현행 장애인복지 관련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많은 조항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행정부의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의한 편위주의에 좌우되지 않고 공개적인 입법에 의해 엄수되도록 한다.